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 12. 17	규칙 제 621호
일부개정	2013. 7. 10	규칙 제 711호
일부개정	2014. 9. 15	규칙 제 759호
일부개정	2015. 12. 21	규칙 제 821호
전부개정	2017. 8. 7	규칙 제 87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5. 15	규칙 제1002호
일부개정	2024. 7. 15	규칙 제1140호(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5>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과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수령거부자,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을 유치 송달보고서에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용인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용인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5조의3(용인시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용인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5조의4(용인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기록·관리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용인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 도세 체납액 순으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
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
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
으로 본다. <개정 2024. 7. 15>

부칙 <2017. 8. 7 규칙 제87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조
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5. 15 규칙 제1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5 규칙 제1140호,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0. 5. 15>

용인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용인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용인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0. 5. 15>

용 인 시

용인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서

① 신청인

○ 신청인 : ○○○ 귀하

1. 용인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용인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용인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용인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용인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 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용인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인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 용인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용인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용인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관인생략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제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제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책호 기분	책호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요납 연월일	사유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총당	계과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일자	수량자	대조자 인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과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제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팀장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팀장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이의신청 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연도 기분	세 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2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원 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input type="checkbox"/> 법원							
당사자	청구인					처분청	
	주소	법인명 또는 상호			성명		
불복경위	제출 연월일	제출기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청구구분	결정연월일	각하	기각	경정
		1. 조세심판원 2. 법원	1. 이의신청	년 월 일			
			2. 심사청구	년 월 일			
	3. 소송제기		년 월 일				
처분내용	세목	과표	세액	연도(기)분	채납 여부	고지연월일	
	처분 사유						
불복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